

’93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안)

검 토 보 고

내 무 위 원 회

'93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처분(안)

1. 提出者 : 충청북도지사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제출일자 : 1993년 6월 2일

나. 회부일자 : 1993년 6월 2일

3. 提案理由

- 기구신설 (청주신산업 기술도시 건설기획단, 민원처리계)에 따른 물품 확보
- 자문대사 파견근무에 따른 물품 확보
- 일본 산리현 직원 파견근무에 따른 물품 확보
- 교육용 농기계 확보 (도민교육원)
- 관용차량 감축에 따른 감축차량 처분

4. 檢討意見

'93 정수관리 대상 물품 취득 처분안을 검토한 결과,

행정의 지방화에 따른 사무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처함은 물론,
사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는 행정의 전산화등 행정장비의
현대화 계획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기구증설 및 신설에 따른 행정장비 확보, 농촌에 영농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용 농기계 확보, 각종 사업실시를 위한 기자재등을 확보코자 '93 정수관리 대상물품을 취득승인 요구하는 것으로서 선규취득 13개 품목 26점은 능률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품목인바,

본 정수물을 취득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존 사용물품중 처분물품 5점도 내구년수가 경과되고 차량의 노후화로 사용가치가 상실된 물품으로 매각 및 폐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수관리 대상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93 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 처분안을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